

FTA 대응

목장경영 안정 대책방안

협회에서는 낙농육우산업 기반 유지·발전과 FTA 대책방안으로 'FTA 대응 목장경영 안정 대책 방안'을 마련하고, 정책반영을 위한 대국회·정부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. 이에 관련자료집을 제작하여 각 정당 대표 및 농식품위원(11.11), 농식품부(11.17)에 전달하고 협회 임원 및 도(연합)지회에 발송(11.17)한 바 있다. 본고는 자료집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 내용이나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.

| 생산기반 유지 |

01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

가. 현황

-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 실패로 전국적인 수급조절에 한계
 - 우유수급 : 낙농진흥회(27%), 서울우유(32%), 기타 유업체(41%)
- 우유 생산의 점진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유소비 정체 내지 감소로 공급과잉 지속
 - 원유생산량/잉여량 : ('02)254/51만톤 → ('05)223/32 → ('07)219/31 → ('08)214/28 → ('09)210/22
 - 우유수급조절지원액 : ('02) 1,298억원 → ('05) 290 → ('07) 280 → ('08) 207 → ('09) 170
- 낙농강국과의 FTA 협상 타결 및 추진으로 낙농부분 피해 현실화
 - 미국, EU, 호주, 뉴질랜드 FTA 동시효과 추정(전국대산학협력단/'08.12) : 최대 3,274억원 생산감소(전체 낙농생산액의 약 25%에 해당)

나. 정부정책 방향

-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(연합)쿼터제 도입
 - 현행 집유주체별 쿼터관리 체계를 유지하되, (가칭)한국낙농위원회를 통해 전국 생산량 및 쿼터량을 종합적으로 관리
- (가칭)한국낙농위원회가 집유주체별 생산쿼터를 등록, 통합 관리함으로써 집유주체별 원유의 과부족을 전국적으로 조정하여 수급안정 도모
 - ① 집유주체별 쿼터량 조사 등록 → ② 원유 전수배(우유가 남는 집유처에서 부족한 집유처로 이동) → ③ 집유주체별 쿼터 전수배 (남유처 변경) → ④ 집유주체별 쿼터 조정 승인

다. 문제점

- 국내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최적생산을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계획생산제 도입이 불가피하며, 이는 낙농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임
- FTA 발효시 국내 유제품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, 그 결과 쿼터식감을 통해 최종적인 부담이 낙농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
 - 이에, 원유생산주체인 농가와 유업체간의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를 토대로 한 전국 쿼터제를 통한 계획생산제 도입을 통해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가 필수적임
- 그러나, 농식품부가 마련한 전국 쿼터제 추진방안은 종단에는 전국 단일쿼터제를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, 현재의 구조적이고 불합리한 집유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, 중앙낙농기구를 신설해 집유주체별 자율가입으로 전국적인 연합쿼터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임
- 정부가 목표하는데로 전국쿼터제를 실현코자 한다면, 집유일원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와 함께 법적,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함

라. 요구사항

- ① 낙농진흥법 개정 :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낙농조합으로 집유일원화 법적근거 마련
 - 전국단위 쿼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유체계 개편과 조정이 불가피
 - 또한, 생산자와 수요자(유업체)간 공정한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해, 이를 담당하고 관리할 생산자위원회(DAIRY BOARD)를 설치하여 원유생산 주체인 농가와 유업체간 공정한 거래의 틀 구축

②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연간총량제 도입

- 예산 요구액 : 연간 100 ~ 150억원

원유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요약

(국회예산정책처, '2004년 국가주요정책·사업평가' 中)

1 수요 및 공급 측면

- 시유소비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홍보 및 광고체계 수립, 시행
 - 학교유유급식 및 군유유급식의 확대 노력 및 체계적인 소비홍보 노력 필요
-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쿼터제를 통한 계획생산 실시가 필요
 - 쿼터제 도입은 합리적인 소비촉진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

2 제도적인 측면

- 낙농진흥회 설립당시 집유일원화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농가가입의 유도 와 계획생산의 유보로 원유생산량 확대 초래
 - 낙농진흥회 자체의 잉여문제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원유수급안정을 도모, 낙농가 보호라는 본래취지 상실
- 선진낙농국의 원유수급정책에 고찰한 결과, 이들 국가들은 국가단위 쿼터제 시행과 함께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 및 물량 조절을 하고 있음

3 추진 방향

- 지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하여 정부, 학계, 단체, 농가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낙농국들의 원유수급조절정책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인 낙농종합 대책을 수립 · 시행해야 함

02 농가 소득보전 및 폐업보상 대책

가. 현황

- FTA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, 국내 낙농생산 기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
- 수입 유제품 증가시 매년 농가 쿼터에 대해 하향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, 농가의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생산량 감축에 따른 소득감소가 예측됨

나. 정부정책 방향

- 피해보전 직불금 산정방식 : 단위면적당 조수입(생산액) 기준
 - 피해보전 비율 : 당년도 조수입과 과거 5개년 평균조수입의 80%수준과 비교, 부족액의 85% 보상

- 축산물(낙농포함) 마리당 조수입 기준으로 지원
- 운용기간 : 협정발효 후 7년으로 설정

☞ 농가당 직불금 : 생산면적(마리) × (기준조수입 - 당년조수입) × 85%

* 기준조수입 : (직전 5개년 조수입 중 최고 ·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조수입) × 80%

○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: 순수익으로 산정

- 대상품목 선정 및 발동요건 :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 수입피해 영향을 분석하여 지원 /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여부 판단기준은 별도 마련
- 운용기간 : 협정발효 후 5년으로 설정

☞ 농가당 폐업자금 : 폐업면적(마리) × 순수익(조수입 - 생산비) × 3년

다. 문제점

- 현행 정부의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 제도 산출방식이 생산면적이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, 낙농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
 - 낙농 쿼터제 시행으로 생산규제를 당하고 있고, FTA 발효이후 한번 쿼터 가 감축되면 시장구조상 다시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함
- 두당 조수입을 기준으로 20%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면, 생산은 제한되어 농가 피해액은 매년 적체될 수밖에 없음
 - FTA발효 이후 농가 쿼터가 삭감되면 농가소득은 감소하나, 마리당 조수입 기준으로 피해보전을 할 경우,
 - 조수입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우유판매수입은 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고정되어 있어, 피해를 보고도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됨

※ 젖소마리당 조수입에서 우유판매수입의 비중 : 약 97%(2009년기준/통계청)
- 또한 FTA 피해로 인해 낙농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농가의 대량 폐업사태가 예측되며, 이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

라. 요구사항

① 쿼터감축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

- 매년 삭감되는 쿼터에 대해 ℓ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유제품 관세철폐 기간 평균을 감안해 향후 10년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

$$\text{☞ 쿼터량} \times (\text{당년조수입} - \text{생산비})/\ell \times 10\text{년}$$

② 낙농 폐업지원금 도입

- 쿼터에 대해 ℓ 당 3년간의 순이익 보상과 함께 재산권화 되어있는 폐업농가의 쿼터를 보상하여 재산상의 손실 보상

$$\text{☞ } [\text{쿼터량} \times (\text{당년조수입} - \text{생산비})/\ell \times 3\text{년}] + \text{쿼터자산가치}(\text{당년시세반영})$$

③ 영세농가 회생자금 지원제도 도입

- 쿼터 800ℓ 이하 영세농가가 폐업을 할 경우, 전업을 위한 회생자금 별도 지원

03 국산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

가. 현황

- '09년 기준, 국내 총 원유생산량 210만톤 중 89.5%인 1,889천톤의 원유는 시유 및 치즈, 밸효유 등의 유제품 생산을 위해서 직접 투입
 - 제품에 직접 투입되고 남는 양(221천톤, 10.5%)은 대부분 분유로 생산해 재고로 보관

나. 정부정책 방향(가공유 지원)

- 수입증가에 대응하여 계절진폭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원유(연간 20만톤, 300억원)를 국산 유제품 원료용으로 신규 공급
 - ① 유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공원료유 지원수량 확정(연간 20만톤 이내) → ② 농가로부터 가공용 원유 생산희망물량을 신청 받아 유업체의 가공원료 신청량 한도 내에서 농가에게 가공쿼터 신규 할당 → ③ 유업체의 신청량과 농가의 가공용 원유 생산량을 상호 연계하여 가공원료유 공급 → ④ 가공원료유 매입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
 - ※ (가칭)한국낙농위원회에 참여할 경우에 한해 가공원료유 공급(생산자에

게는 가공쿼터 추가 부여) 등 가능

다. 문제점

- 계절별 수급편차에 의해 잉여우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나, 국산원유는 음용유(시유)외에는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며,
 - 향후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개방 확대시 국내 유제품 시장은 외국 유제품에 의해 잠식당할 수밖에 없음
- 정부의 가공유 지원대책은 국산유제품 시장 형성과 (가칭)한국낙농위원회에 유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시됨
 - 그러나 유업체 신청에 따라 가변적이며 수요(신청량)이 없을 경우, 유명무실한 제도임
 - 유업체 입장에서 현재도 초과원유(반값우유)를 쿼터 조정을 통해 자유로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, 가공원료유 지원으로만 쿼터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중앙낙농기구에 가입할 이유가 없음
- FTA대비 국산 유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국산 원유 소비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
- 특히, 최근 치즈는 고부가가치 유제품으로 계속적인 소비확대 및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산원유 치환대책은 미진
- 또한 잉여원유에 대해 그간 관행적으로 저장성이 높은 분유로 처리해 왔으며 분유시설 또한 노후화됨

라. 요구사항

- ①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낙농조합으로의 집유일원화를 통해 생산자가 쿼터를 관리하는 체계 하에 가공원료유의 전국적인 지원체계 구축
 - 지원방법 : 국내 전 유가공업체(농가)를 대상으로 국내산 원유 중 쿼터 내 물량으로 치즈, 분유, 생크림 등 가공 원료유에 대해 자금 지원
 - ☞ 유업체의 매월 시유 및 가공유제품 생산 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(정상유대로 사용된 가공유제품 정확히 표기)
 - ☞ 농식품부는 이를 조사하여 유가공업체별로 가공용 제품에 사용된 정상 유대 물량을 산출하여 분기별 지원
 - 예산 요구액 : 연간 300억원 수준

☞ 쿼터내 물량 중 연간 약 10만톤 × 300원 = 300억원

② 유제품수입에 따른 관세를 재원으로 '치즈 기금' 설치

- 지원방법 : 국산 원료로 치즈 생산시 치즈용 원유에 대한 가격보
- 예산요구액 : 연간 50 ~ 100억원 수준

☞ 일본의 치즈기금 도입 사례(한·호주/뉴질랜드, 한·일 FTA 대비 낙농산업 영향분석 / 2008년,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)

- 1986년 공급과잉시 170억엔의 '치즈기금'을 설립해 1987년부터 유업체가 치즈용 원유를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치즈용 원유 kg당 15엔의 장려금 지급
- 이 제도는 현재까지 지속됨에 따라 잉여유를 이용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치즈를 생산함으로써 2007년 현재 자연치즈를 기준으로 추정한 치즈자급률은 16.4%에 달함

③ 수출유제품 지원

- 원료유에 대한 일부 차액 보전
- 물류비 지속 지원
- AT, KOTRA 등을 통한 현지 시장 개척 및 협력체계 구축

| 소비기반 확대

04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

가. 현황

- 현재 학교우유급식은 저소득층(초등생·차상위계층)에 대한 무상급식과 일반 학생에 대한 유상급식으로 병행 실시 중임
 - 일반학생에 대한 유상급식은 시중가격의 약 50%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
- 유업체들은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저가 공급 등으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학교우유급식에 소홀할 수밖에 없음
 - 그럼에도, 유업체가 학교우유급식을 하는 것은 미래 소비자 양성을 위해 투자차원에서 저가로 공급하고 있는 것임
- 칼슘 등 영양성분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·고등학생의 우유 급식률은 초등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
 - 2007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, 청소년의 칼슘섭취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66.3%, 중고등학교 89.5%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칼슘부족 현상이 심각함

〈학교우유급식 현황〉

(단위 : 명, %)

구 분	08년(A)		09년(B)		증감(B-A)	
	급식학생	급식률	급식학생	급식률	급식학생	급식률
초등학교	2,889,430	78.4	2,798,437	80.5	△90,993	2.1
중 학 교	517,859	25.4	621,664	31.0	103,806	5.6
고등학교	338,741	20.6	416,317	21.2	77,576	0.6
특수학교	22,490	97.2	18,105	76.3	△4,385	△20.9
계	3,768,520	51.0	3,854,523	51.6	86,004	0.6

나. 문제점

- 우리나라와 중국만이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별개로 실시중임
 - 중국은 신선우유의 공급자체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분리실시 불가피
- 선진국들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학교급식에서의 우유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

〈국가별 학교우유급식 현황〉

	한 국	일 본	미 국
급식율	51.6%('09)	92.4%('06)	95%이상
급식시작년도	1981	1957	1954

- 일본 : 학교급식법에 의해 의무급식 시행, '57년부터 시유 제공
- 미국 : 아침·점심급식, 방학중 급식, 방과후 간식의 일부로 우유제공
- 영국 : 급식영양표준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 매일 공급

다. 요구사항

- ①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제도적인 통합방안 마련
 - 낙농진흥법 개정 : 농식품부에서 교과부와 협의하여 매년 학교우유급식을 위한 공급수량 공표
 - 농식품부-교과부 통합 '우유급식지침' 설정을 통해 통일된 기준 마련
 - ※ 현재 교육과학기술부(학교급식법)과 농림수산식품부(축산법, 낙농진흥법)가 서로 다른 기준에 의거 학교우유급식 실시
- ② 보조급식외에 냉장시설, 기기에 대해 재정보조 지원으로 확대
 - 소요예산 : 약 130억원 예상

$$\text{■ } 3,500\text{개소(읍면도서지역 학교)} \times 3,500\text{천원(냉장고 1대)} = 12,250,000\text{천원}$$

③ 학교급식 무상급식 도입과 연계하여 우유무상급식 실시

- 지자체별 학교급식 무상급식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, 현행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서 전 학생으로 우유무상급식 확대
- ※ 현재 정부의 일반무상급식과 우유무상급식도 차별화되어 있음
 - 일반무상급식 인원은 약 80만명(차차상위계층) 수준
 - 우유무상급식 인원은 약 50만명(차상위계층) 수준

05

군·전·의경 우유급식 지원 확대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우유 군급식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198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, 현재 군급식 우유용량은 250ml(1인/일)임
 - '02년 군 우유급식 용량을 300ml로 증량키로 하였으나,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ml에서 250ml로 증량됨
 - ※ '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나, 최종심의에서 제외된 바 있음
- 군급식 우유용량이 성인의 적정 섭취량의 절반 수준에 그쳐 활동량이 많고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군 장병에게 크게 부족
 - 성인 하루 우유섭취 적정량 : 400ml 이상
- 또한, 군과 같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의무경찰(행정안전부 소속)과, 전투경찰(국방부 소속)에는 우유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
 - ※ 어청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(2008. 1. 21)
 - 어청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시, 유기준 의원이 전·의경 우유급식 의향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

나. 요구사항

① 군장병의 급식용량을 250ml에서 300ml로 증량

- 추가 소요예산 : 연간 110억원 예상

☞ 전체예산 : 현행 552억원 → 662억원 (추가 110억원 소요)

② 행정자치부, 경찰청과 협조하여, 의무경찰·전투경찰 우유급식 실시

- 소요예산 : 연간 약 70억원 수준

☞ 55천명 × 331원(250㎖) × 365일 = 6,644,825천원 (250㎖ 군납가격 기준)

다. 기대효과

- 우유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기반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
- 군, 경찰병력의 체력향상과 영양보급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
 - 우유급식은 체력향상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라는 목적으로 단체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것임

06

육우고기 군납 용량 확대

가. 현황

-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수입개방 여파로 육우산업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됨
 - 지난 '08년 미산쇠고기 수입재개,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실시 이후 육우가격이 대폭 하락함

〈미산쇠고기 협상타결일('08.4.18) 기준 쇠고기·송아지 가격 변화〉

구 분	'07년 평균(A)	'08.12월 평균(B)	변화율(A/B)
경락가격	육우전체	8,271원/kg	6,573원/kg △20.5%
	한우전체	14,383원/kg	13,535원/kg △ 5.9%
송아지가격	젖소초유폐기(수)	458,000원	47,000원 △89.7%
	한우송아지(수)	2,133,000원	1,463,000원 △31.4%

자료 : 축산물품질평가원, 농협중앙회

- 이후 육우 군급식 실시 및 증량,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육우고기 소비홍보를 통해 육우가격이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
 - 한우 사육두수 증가, 쇠고기 수입확대 등 외적인 요인으로 다시 하락 국면에 돌입

〈최근 쇠고기 가격 변화〉

구 분	'10년 2월(구절) 평균(A)	'10.9월(추석) 평균(B)	변화율(A/B)
경락가격	육우전체	10,788원/kg	9,292원/kg △13.9%
	한우전체	17,333원/kg	15,798원/kg △ 8.9%

자료 : 축산물품질평가원, 농협중앙회

나. 문제점

- 취약한 유통기반과 여전히 저조한 소비자 인식상, 사소한 요인으로도 언제든지 육우가격 폭락과 육우농가 사육포기가 우려됨
 - 수입쇠고기 국내시장 장악, 전체 국내쇠고기산업 악영향
 - 소비자의 다양한 국내산쇠고기 선택권 상실
 -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낙농산업 피해 가능성

다. 요구사항

- 국내산 육우고기 군급식 공급물량 확대(9→15g/1일 1인)
- 추가 소요예산 : 연간 약 90억원 예상(2010년 기준)

☞ 추가예산 : 6g × 수입육 대체비용(25억원~10억원) = 약 90억원
 * 1g당 육우고기비용 : 약25억, 1g당 수입육비용 : 약10억,

- 연간 16,500두 규모, 전체 도축량 112천두중 약 15% 차지, 육우 수급 조절에 큰 기여 예상

〈쇠고기 군급식 현황〉

구 분	한우	육우	수입산	계
물 량	12g	9g	14g	35g

* 육우 군납물량 추이 : '08년 5g → '09년 8g → '10년 9g

다. 기대효과

- 군장병에게 안전한 국내산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육우공급을 통해 수입육 안전성 논란불식, 한우공급 대비 예산절감
- 적은 예산으로 농가에게 상대적으로 큰 FTA 피해대책 효과 발생

07

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지원 확대

가. 현황

- 그간 한우위주의 정책 및 언론홍보 등에 따라 육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에서, 정부차원의 사전 준비없이 미산쇠고기가 수입 재개되어 육우와 송아지가격이 폭락함
-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'09년부터 육우 이미지 개선을 위해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예산을 지원해 왔으나,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짐

- ('09년) 16.4억 원 → ('10년) 10억 원 → ('11년 산) 4억 원(잠정)

나. 문제점

- 유통기반이 취약하고 소비자 인식이 낮은 육우 특성상, 사소한 요인으로도 언제든지 가격폭락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음
 -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듯, 올 들어 쇠고기 수입 확대 및 한우두수 증가 등으로 육우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- 계다가 축산강대국인 미국, EU, 호주, 뉴질랜드 등과 FTA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어, 수입쇠고기와 직접적인 경쟁상대인 우리 육우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임

다. 요구사항

- '11년도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 예산을 20억 이상으로 확대 지원
 - 육우가격 안정 및 한·EU FTA 육우부문 대책 일환
 - 지속적인 육우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육우에 대한 이미지 개선
 - ※ 별도로 작년부터 육우 임의자조금사업이 개시되었으나, 사업 초기 단계이며 한우·낙농산업과의 연관성 등 이유로 규모가 미미한 상황임(3억 원 수준)

비용절감

08 사료가격 안정 대책

가. 현황

- '06년 말부터 사료값 폭등, '09년 인하폭이 미비하여, 축산농민 경영 불안 지속
 - '06년 말부터 '09년 초까지 약 60% 배합사료 가격 폭등, '09년 다섯 차례 인하하였으나, '09년 10월 현재 '06년 대비 여전히 약 35% 인상된 가격 수준임
 - 해상운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조사료 가격 상승
- 특히, 낙농업의 경우 타 축종에 비해 사료비 비중이 높아, 높은 사료가격은 목장 경영 불안 요인으로 작용
 - 축종별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유가 가장 높아, 타 축종에 비해 사료가격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임

〈축종별 생산비중 사료비 비중〉

(단위 : %)

구 분	비 육우	우 유	비 육돈	계란	육계
사료비 비중	37.0	59.7	53.6	53.7	56.9

※ 자료 : 2008년도 축산물생산비(2009.6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

나. 문제점

- 높은 해외의존으로 향후 곡물파동시 사료값 폭등 재연 예상
- 우리나라 곡물구조상 모든 농산물을 국내에서 자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
 - 전체 농산물을 자급하기 위한 경지소요량은 715만ha(2004년)이나, 경작면적을 326만ha에서 194만ha로 감소
 -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곡물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271만ha의 경작지가 필요한 상황이나, 현재 경지면적은 축산물 자급을 위한 경지 필요량의 61%에 불과

다. 요구사항

- ① '08, '09년 농가 사료특별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
 - 거치기간 또는 분할상환 기간 연장
- ② 배합사료안정기금 설치 · 곡물 비축관리제도 운영
 - 국제곡물가 인상시, 현재로서는 완충장치가 없어 사료가격 인상시 농가부담으로 직결
 - 배합사료안정기금 설치로 사료값 폭등시 축산농민 부담 완화
 - 곡물 비축관리제도 시행으로 국제곡물가격 급등시 비축곡물의 적정 방출로 수급 안정

※ 일본의 경우, 배합사료안정기금(1968), 곡물비축제도(1974) 도입
- ③ 조사료 수급안정 대책 수립
 - 식량자급률 설정시, 사료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지원방안 마련
 - 휴경논, 간척지 등을 활용한 조사료포 조성 및 생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
 - 새만금 등 간척지를 조사료포로 활용, 자급조사료 생산관련 지원제 도입 등

09

낙농구조 개편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, 낙농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공제 범위는 고정되어 있음
 - 현행 : 농가부업규모 축산업의 범위 (젖소 30두)
- 낙농후계자의 가업승계시 상속세, 증여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실정
 - 축산업의 초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하면서 나머지 축산업 자산 전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규정
- 도시화에 따른, 목장이전에 관한 지원 및 세제 감면제도 마련 필요
- 낙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확대하여, 세제부담 완화 필요
-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도,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,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

나. 요구사항

- ①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의 범위확대
 - 젖소 : 현행 30두 → 80두로 조정
- ② 낙농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용으로 상속세, 증여세 부담 완화
 - 초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하면서 나머지 축산업 자산 전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바, 축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
- ③ 목장 이전 자금에 대한 정책지원 실시
- ④ 목장용지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
 - 목장용지의 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
- ⑤ 목장 이전시 취득세, 등록세 전액 감면
- ⑥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에 낙농기자재 추가, 확대
- ⑦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시 부가가치세 면제

10

농공 육성우목장 설립 지원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도시근교 낙농이 중심인 국내 낙농산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규모화 및 전업화,

급진적인 도시화에 따라, 사육공간 부족, 환경·민원문제, 부채문제, 노동력 부족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

- 이는 낙농가의 주요 폐업원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, 개별농가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해결방안 모색은 어려운 상황임
- 이에 대한 대책으로, 현재 목장에서 육성우 과다사육에 따른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사양방법을 개선키 위해, 공공 육성우 목장을 설립하여 경영의 외부화를 피할 필요가 있음
 - 그러나 지속적인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비용 절감을 실현할 필요가 있으나, 국내에는 육성우목장이 전무한 실정임
- ※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1970년대 이후 공공 육성우목장의 활성화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

나. 요구사항

- 국공유지, 간척지를 활용한 공공 육성우 전문목장 운영
 - 지원방법 : 국공유지, 간척지를 활용한 부지 확보로 장기(40년이상) 무상 임대, 협동조합 중심으로 운영, 초기 시설투자 자금 지원 및 적자운영보전을 위해 자금 지원
- ※ 육성우 전문목장의 정착단계까지는 적자를 피할 수 없는 만큼,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
- 사업목표 : 전국 낙농집산지를 감안, 20개소 공공 육성우 목장 설립

(단위 : 명, %)

구 분	2011	2012	2013	2014	2015	계
개설 목장수	4개소	4개소	4개소	4개소	4개소	20개소

- 예산요구액 : 연간 140억원 수준 (보조 70% 금액, 4개소 기준)

- ☞ 1개소당 총 소요금액 : 약 50억원 내외
 - 축사시설 : 3,750평(1,500두×2.5평) × 850천원 = 3,188백만원
 - 목장부지, 조사료부지 : 장기(40년이상) 무상임대
 - 축분처리서설 : 10억원 ~ 15억원)

다. 기대효과

-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으로 규모화, 전문화에 따른 원유생산성 향상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
 - 목장의 적정 육성두수 유지로 비용 절감 및 사양환경 개선
 - 공공 육성우 목장을 활용함으로써, 목장에서는 착유소 중심으로 보유, 우유 생산에 전념

환경, 농노대책

11 낙농단지 조성

가. 현황

- 도시개발, 환경규제 강화 등 목장경영여건의 악화로 낙농가 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
- 목장 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, 환경, 민원 문제 등으로 목장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
 - 2008 목장종합실태조사(서울우유) 결과, 전체조사 목장 2,225호 중 396호 (약 18%) 목장이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나. 문제점

- 목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확보여부가 필수적이나, 도시개발과 환경규제 등으로 목장이전이 불가피한 경우, 적정 장소 부족으로 어려움 가중
 - '07년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에도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종 민원으로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임
- 서해안 간척지(새만금, 시화호 등) 등에 목장 이전도 간척지 이용계획으로 목장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임
 - 이전이 가능하더라도, 축사신축, 세금, 형질변경 비용 등이 애로사항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됨

다. 요구사항

- 낙농생산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일정지역(간척지, 농지 등)에 낙농단지로 지정하여 목장이전이 가능토록 제도화 필요

12 축산분뇨 자원화**가. 현황 및 문제점**

- 상당수의 낙농가가 도시근교에 입지해 있음에 따라, 도시화의 확대로 축산분뇨 민원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임
- 낙농의 경우, 타 축종에 비해 경종농가와의 조사료 생산 및 분뇨처리 등에 있어서 상호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나, 분뇨자원화의 자가 활용이 높아, 이에 대한 연계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
 - 2007 낙농기초조사 연구(한국낙농육우협회)에 따르면, 분뇨처리 방법은 자가활용이 30.4%, 일부 자가활용/ 판매가 34.1% 순으로 나타남
- 가축분뇨 처리시 ▲처리시설 비용 과다 ▲시설관리의 한계 ▲퇴·액비 품질 불균일 ▲경종농가 신뢰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

나. 요구사항

- ① 축산분뇨 자원화 및 경종농가 연계를 위해, 지역단위(시군) 퇴비처리 영농조합 형태로 토지구입, 시설자금 지원 대책 마련
- ② 도시근교, 평지농촌, 산간지역으로 구분하여, 목장 여건에 따른, 분뇨처리 자원화 방안 강구

13 무허가 축사 양성화 (가축사육시설 정책대상 포함)**가. 현황**

- 미국, EU, 호주, 뉴질랜드 등 축산강대국과의 FTA가 연이어 추진되고 있고 축산환경 및 질병문제, 사료값, 부채문제, 소비위축 등 많은 악재로 인해 축산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화에 밀려 축산농민들은 그나마 좁은 국토에서도 이리 저리 내몰리며 살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형국임
 - 정부의 전업·규모화 정책과 더불어 까다로운 허가절차 및 요건, 세금문제 등 온갖 악조건에 시달리면서 다수의 무허가 축사가 부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
- ※ 우리협회 실태조사 결과, 약 70%가 무허가 축사 보유(05)

나. 문제점

- 축산업등록제 도입당시,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구에 따라 '축사' 대신 '가축사육시설' 개념으로 등록조치 된바 있음
 - 당시 농림부는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등록정보에 대해 목적외 사용을 금지키로 약속한 바 있음
- 일선 시군 농가 등록정보 목적외 사용(환경·건축단속) 사례 발생, '축사 두당 사육면적 준수의무', '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축파라치 기승으로
 -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축산영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임
- 무허가 축사 보유시 친환경축산물 인증, 축사시설현대화, 재해보상,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어,
 - FTA 등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축산농민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음
- 특히 친환경은 우리 축산의 모토이자 정부의 정책기조이며, 축사시설현대화 등은 FTA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임에도
 - 다수를 차지하는 무허가 축사를 정책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수의 축산농가에게 경쟁력 강화 기회를 박탈하면서 우리 축산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함
 - ※ 친환경, FTA대책 등 각 고유목적을 지닌 정책사업 대상 선정에 건축관련 사안인 축사 허가 유무를 개입시키는 것은 불합리함

다. 요구사항

- ① 축산법상 가축사육시설로 등록된 무허가축사에 대한 정책대상 포함
 -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 대상을 건축관련법상 허가여부가 아닌, 축산법상 가축사육시설 등록기준으로 설정
 - 친환경축산물(유기·무항생제·환경친화축산농장) 인증, 축사시설현대화, 각종 재해보상, 가축분뇨처리지원 등
- ② 무허가 축사 특별조치법 제정 및 시행
 - '92년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가 단행('92.12 ~ '93.12)된바 있음
 - 추인완료 '93.12, 76%(대상축사 대비)
- ③ 무허가 축사 철거 및 신축 시 정책자금 지원
 - 각종 환경·건축 규제 및 비용경감 조치 병행 ☺